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5-1812호

-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-

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

「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」 관련 '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'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25년 7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: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

나. 사업기간: 2025. 1. ~ 12.

다. 사 업 비: **100백만원**(민간경상사업보조, 시비100%)

라. 지원대상: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사업주)

-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

※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[별표3]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

※ **우선지원** ①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, ②산재사고 사업장(최근 3년간 1회 이상), ③인천시 시행 안전점검·지도, 컨설팅 추진 사업장

마. 지원방법: 보조금 지급

바. 지원금액: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(부가세 포함) 지원 ※자부담 10%

사. 지원내용

1.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
2.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(보호장비)
3.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

※ 지원금 범위내 방호장치, 보호구, 휴게시설 개선 비용 모두 집행 가능

2. 지원제외

가.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(사업체) 중복지원 불가

나. 산재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

다.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

3.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

가. 공고기간 : 2025. 7. 25.(금) ~ 2025. 10. 31.(금) *보탬e시스템

나. 접수기간 : 2025. 7. 25.(금) ~ 2025. 10. 31.(금) 18:00 마감

다. 신청방법 : **「지방보조금시스템」 보탬e 시스템 신청만 가능**

※ 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’ 사용 관련 → 사용자지원센터 (☎1660-1390)

라. 구비서류

-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[서식 1]
- 사업계획서(사업비 집행계획 포함), 구입 예정 물품 또는 환경개선 필요 현장 사진 각 1부 [서식 2]
-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1부 [서식 3]
-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[서식 4]
- 사업자(사업장) 확인 증빙서류(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등) 1부

4. 사업자 선정

가. 내　　용: 적격성, 사업 추진의지, 추진계획 적정성, 사업운영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

나. 배 점 표:

항목	배점	심사 내용
계	100	
적격성	25	지원대상 적합(소규모사업장, 산재보험료 체납) 여부 등
사업 추진의지	25	사업 추진의지,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
추진계획 적정성	25	사업의 적격성 및 목표 실현가능성, 수혜도 등
사업운영 적정성	25	예산편성 타당성, 사후관리 등

5. 선정결과 발표: 보탬e시스템 및 개별 통보

6. 유의 사항

가.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평가 사항은 비공개 원칙임.

나.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, 집행내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[보탬e https://www.losims.go.kr] 등록・사용 의무화

다. 본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

라.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

7. 문의처: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(☎ 032-440-4418, 4417)

붙임 신청 서류(서식) 각 1부.　끝.

서 식 1

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<table>
<tr><td>사 업 명</td><td colspan="4">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</td></tr>
<tr><td>업 체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사업자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 업 기 간</td><td colspan="2">2025. 9. ~
*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기간</td><td>대표자</td><td></td></tr>
<tr><td>상시 근로자수</td><td colspan="2">_____명 (외국인 _____명 포함)</td><td>산업재해 건수
(최근 3년간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소 재 지
(주 소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 방 보 조 금
교 부 신 청
(단위: 천원)</td><td>총사업비
(A+B)</td><td>지방보조금
(A)</td><td>자기자본 부담액
(B)</td><td>비 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*보조금의 10% 이상</td><td></td></tr>
<tr><td>지 방 보 조 금
수 령 계 좌</td><td colspan="4">은 행 명 :
계좌번호 :
계 좌 명 :</td></tr>
<tr><td>지방보조사업
목 적</td><td colspan="4">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보호구,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</td></tr>
<tr><td>지방보조사업
내 용</td><td colspan="4">□ 방호장치 □ 보호구 □ 휴게시설 개선
*해당사항 모두 체크</td></tr>
</table>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방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신 청 인(대표) : (인)

인천광역시장 귀하

※ 첨부서류

1. 사업계획서 및 구입예정 방호장치 또는 현장사진 각 1부.
2. 자기부담금 확약서 1부.
3.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.
4. 사업자(사업장) 확인 증빙서류 1부.

서 식 2

사 업 계 획 서

1.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

2. 사업목적 및 필요성 :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

3. 사업개요

○ 기　　간 : *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기간

○ 장　　소 : *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장소(사내 휴게실, 생산1부 등)

○ 사업내용 : *사업 추진 내용(방호장치, 보호구, 휴게시설 지원 구분 기재)

- *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(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등 세부내역 기재)
- *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(휴게실 냉난방기 구비 등 세부내역 기재)
-

4. 소요사업비 산출내역(예시)

(단위: 천원)

사업내용		산출기초	계 (A+B)	지 방 보조금 신청액 (A)	자체부담 (B)	비 고
지출항목	방호장치					
합　계			2,200	2,000	200	
지게차	전조등	40,000원*5개	200	200		
	헤드가드	500,000원*2대	1,000	1,000		
사내 휴게실	냉난방기	800,000원*1대	800	800		
	휴식의자	50,000원*4개	200		200	

※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

서 식 2

방호장치(구입예정) 또는 현장(환경개선 예정)사진
ex) 휴게실, 냉난방기, 레드가드

서 식 3

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

○ 사업명: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

(　　)에서는 「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지원」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사업종료 후 정산완료까지 자기부담 사업비 ____%를 성실히 확보하고 교부조건에 맞춰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25년　　월　　일

신청인(대표자)　　(서명/인)

인천광역시장 귀하

서 식 4

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인천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부터 제40조)

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제39조(벌칙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5. . .

업체명 : **대표 :** (서명)

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(서명)

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(서명)